

퇴직금 지급규칙

[제정 2009. 7. 8]

[개정 2010. 11. 12]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5. 7]

[개정 2013. 11. 25]

[개정 2014. 9. 29]

[개정 2015. 3. 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여규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해임, 사망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 등 일체의 진흥원 임직원의 신분을 떠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2.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산출한 1개월분의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민법에 규정한 혈족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원의 임기만료
5. 사망으로 인한 퇴직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고용계약기간 만료 시

② 임원 및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8조 3항의 면직 제한자 및 비위행위자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3.31)

제4조(지급일)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근속년수의 산정) ① 임직원의 근속년수 계산은 퇴직자의 진흥원임명 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만년수로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편(개편)계획에 의해 진흥원 통합 직전기관에서 부여된 근속년수는 진흥원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그 본인에게, 사망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특별가급) (삭제 2014.9.29)

1. (삭제 2014.9.29)
2. (삭제 2014.9.29)

제9조(지급특례) (삭제 2014.9.29)

1. (삭제 2014.9.29)
2. (삭제 2014.9.29)
3. (삭제 2014.9.29)

제10조(청구시효) 이 규칙에 의한 퇴직금의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3.31)

②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3.31)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신설 2015.3.31)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신설 2015.3.31)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신설 2015.3.31)

제12조(희망퇴직수당)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퇴직금 중간정산) 근속 1년 이상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개정 2012.12.31)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개정 2012.12.31)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개정 2012.12.31)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개정 2012.12.31)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2.12.31)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개정 2012.12.31)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2.12.31)

제14조(중간정산 신청금액)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퇴직금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중간정산 기준) ①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일반 퇴직금 정산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산한다.

- ②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익일부터 한다.
- ③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잔여기간을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6조(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자는 신청일 기준 2년간은 재신청할 수 없다.

부 칙(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편(개편)계획에 의해 진흥원으로 통합된 입사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직전기관 규칙에 의한 퇴직금 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기관 근속기간에 한해 해당기관 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한다.

부 칙(2010.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퇴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임·직원	· 근속년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별표 2> (개정 2010.11.12)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정년잔여기간	지 급 기 준	비 고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기본급의 50%×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하	퇴직당시 기본급의 50%×60개월 + 퇴직당시 기본급의 25%×(정년 잔여월수 - 60개월)	

<별표 3>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비 고
퇴직당시의 기본급 × 12월	

